



(사)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

수신자 회원기관장 귀하

참 조

제 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장기요양기관 대응요령 안내

1. 보건복지부 요양보험운영상-423('20.1.30)호와 관련입니다.
2. 위 대호와 관련,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되고 있고, 국내에서 추가 확진환자가 발생함에 따라, 장기요양기관 관련 협회의 감염 예방을 위한 철저한 대응을 요청 해 왔습니다.
3. 이에, 질병관리본부에서 제작한 「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수칙」과 집단시설 감염 관리 대응요령 등을 알려드리니, 장기요양기관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에 철저히 대응 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드리며,
4. 또한, 사람이 많이 모이는 각종 행사 개최 등은 최소화하여 주시고, 부득이하게 행사를 개최하는 경우에도 중국(후베이성 등) 입국자 및 발열, 기침, 인후통 등 의심증상 발생자는 참석을 가급적 자제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<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대응요령 >

가.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(포스터 붙임)

- 손바닥, 손톱 밑 꼼꼼하게 손씻기!
- 기침할 땐 옷소매로 가리기!
- 기침 등 호흡기 증상자는 의료기관 방문 시 반드시 마스크 착용
- 의료기관 방문 시 의료진에게 해외여행력 알리기
- 감염병 의심될 땐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 상담

나. 노인의료 · 재가복지시설 및 장기요양기관 대응요령

○ 중국(후베이성 등)에서 입국한 종사자 업무배제

- 후베이성 입국자 : ① 입국 14 일간 업무배제 (필수) 및 자가격리 권고,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(발열, 기침, 인후통, 숨참 등),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 신고 안내
- 그 외 중국 입국자 : ① 입국 14일간 업무배제(고려), ② 14일간 증상 출현 모니터링(발열, 기침, 인후통, 숨참 등), ③ 의심증상 발생시 보건소 및 1339콜센터신고 안내

※ 격리조치에 따라 업무에서 배제된 종사자의 월 기준근무시간은 1일 8시간 ,

최대 14 일 범위내에서 예외적으로 인정

○ 중국입국자에서 발열이나 기침, 인후통 등 호흡기증상 발생시 조치

- 후베이성 입국자 :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,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, ③ 보건소나 1339 콜센타를 통해 즉시 신고
- 그 외 중국 입국자 : 14일 이내 중국방문력이 있는 종사자에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발생할 경우 ①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, ② 분리된 장소에 임시 격리하고, ③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도록 조치

○ 환경관리

- 오염이 가능한 표면은 자주 청소 및 소독 시행, 손세정제 비치, 손씻기를 시행할 수 있도록 비누 및 티슈 등 비치

○ 불필요한 외부인 출입(면회, 요양보호사 실습 등) 자제

- 외부인의 출입을 제한하고 외부인이 출입하는 곳에 손소독제 등 비치
- ※ 요양보호사 양성 현장실습기관에서 실습지도를 보류할 경우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은 이에 따라 실습교육 일정 조정(교육 종료일 연기)

○ 행사 등

- 시설 및 기관 내 행사 및 사람이 많이 모인 장소에서 외부 활동은 자제

○ 호흡기 증상시

- 종사자 및 입소자가 기침 등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즉시 마스크를 착용하고, 병원, 보건소 등 진료 후 후속 조치

- 붙임 : 1.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예방수칙. 1부.
2. 신종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개요 1부.
3. 집단시설 감염관리 1부. 끝.

(사)한국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장



사무처장

정한채

사무총장

함천우

회장

조용형

협조자

시행 : 한노협 2020-052호 (2020.2.4) 접수

우 03056 서울시 종로구 북촌로 4길19 신영빌딩 203호 / <http://hnh.or.kr>

전화 국번없이 1599-2023 / 전송 02-2665-2013 / hnh2023@hanmail.net